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춰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유산 체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등을 개정 (안 제1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문화관광과
-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2024. 6. 6.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남양주시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련법 인용 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건으로,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한 기존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상이했던 분류체계를 전환·정비함으로써 ‘국가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1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표1]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해 개정되는 남양주시 13개 조례

순번	조례명	담당부서
1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2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정책기획과
3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지역경제과
4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세정과
5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6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7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8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9	남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환경정책과
1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정책과
11	남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관리과
12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기반조성과
13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농생명정책과

■ 참고자료 2 :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21곳 조례 개정

[표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제정 현황 (개정 4곳, 입법예고 4곳)

순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1	경기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2024. 05. 17.
2	가평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05. 16.
3	군포시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05. 15.
4	부천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	수원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05. 17.
6	오산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연천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화성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참고자료 3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추진 배경

-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 (명칭 한계)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추진 경과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구성 / 시행 : 총 6장 35조 ○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 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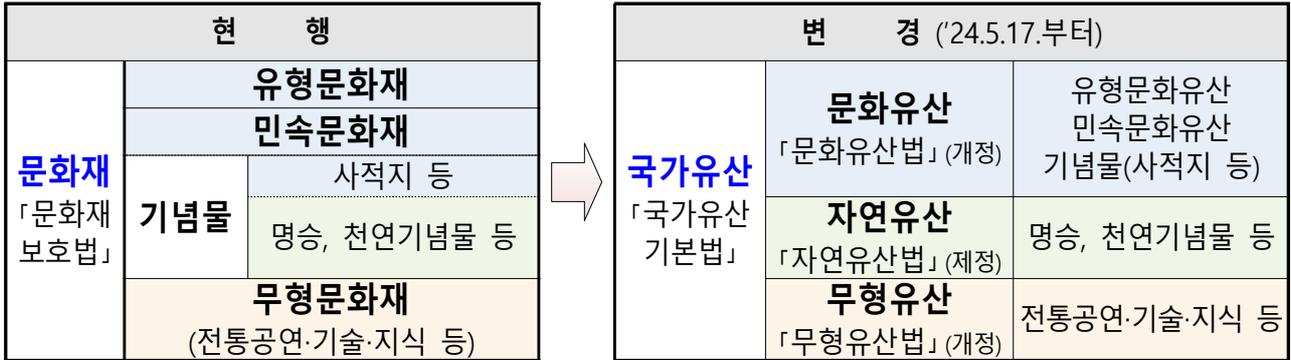
-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24. 2.13.)

□ 주요 내용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참고 1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기준

□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행]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국가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시도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개선]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지정	국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록	국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시도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

-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자연유산위원회(자연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행	변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 ^(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 ^(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 ^(문화유산법)	

-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시도지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기념물	
		○○ 자연유산	위원회 심의 등 재편 필요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자료	○○ 문화유산자료	
○○ 자연유산자료		자연유산법 개정('24.2.6.)	
기초단체 지정	○○ 향토문화재	○○ 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치환 권고
	○○ 향토문화유산		
	○○ 보호문화유산	○○ 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참고 2

국가유산 체제전환 외국어 명칭 기준

□ 명칭 기준 상세

국문	영문	중문	일문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KHS	国家遗产厅	国家遺産庁
국가유산	National Heritage	国家遗产	国家遺産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文化遗产	文化遺産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自然遗产	自然遺産
무형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非物质文化遗产	無形遺産
국보	National Treasure	国宝	国宝
보물	Treasure	宝物	宝物
국가민속문화유산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国家民俗文化遗产	国家民俗文化遺産
사적	Historic Site	史迹	史跡
국가무형유산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国家非物质文化遗产	国家無形遺産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天然紀念物	天然記念物
명승	Scenic Site	名胜	名勝
유형문화유산	Tangible Cultural Heritage	物质文化遗产	有形文化遺産
기념물	Monument	紀念物	記念物
문화(자연)유산자료	Cultural(Natural) Heritage Material	文化(自然)遗产资料	文化(自然)遺産資料
국가지정유산	State-designated Heritage	国家指定遗产	国家指定遺産
시도지정유산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市·道指定遗产	市·道指定遺産
국가등록유산	State-registered Heritage	国家登录遗产	国家登録遺産
시도등록유산	City/Province-registered Heritage	市·道登录遗产	市·道登録遺産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

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 ⑬ (생략)

[시행일: 2024. 5. 17.] 제2조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3. 27.>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⑩ (생략)

☑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4. 5. 17.]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라. 천연보호구역
 -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 17.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건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단순 용어 치환 등)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이주연